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안 제16조)

나.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에 대한 예시를 들어 규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라. 소방청 소관부서의 장만이 분류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소관부서 직원도 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1]을 개정함.

- 특수구급차 : 용도별로 규격이 다른 구급차가 도입(임산부용 중형구급차, 다수사장자 이송용 버스인 대형구급차)되어 세세분류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비고란에 규격을 신설,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분말 소화기 : 화재 현장에서 사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제6조제2항나호) 내용연수를 다른 소화기와 같이 소모품으로 개정.
- 단식 사다리 : 안테나식 사다리와 일반사다리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
- 이동식 소화수조 : 세분류(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 대형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또는 소방자동차 등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이동식 수조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이동식 수조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의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재진압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전기차 화재진압 보조장치 : 세분류(방사 장치)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방사 장치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세세분류를 소방호스 치수별로 구별하였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기능·구조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마취장비 : 블로우건과 마취총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마취장비로 수정하고 세세분류를 구분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벌집제거장비(보호복, 제거기 등) : 벌집제거장비는 세트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을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급류에 의한 손·망실 우려가 높아 소모품으로 설정.
- 경계지역 설정라인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HotZone(빨강), Warmzone(노랑), ColdZone(파랑)으로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개정.
- 유압엔진펌프 : [별표 3]에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별표 3]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과 배터리식으로 구분하여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야간투시경 : 적외선이 적용된 장비는 열상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야간투시를 하는 방법에는 적외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분류 및 세분류 명칭 개정.
- 수색장비, 소방드론 : 육상드론과 수중드론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소분류 명칭을 공중수색장비에서 수색장비로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자동식산소소생기 : 세세분류에 고정용·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세분류의 "(고정용)" 자구를 삭제.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ml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크기 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영아이송장치 : [별표 3]에 있는 장비로 [별표 3]과 일치되게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소독기 : 기동장비외 청사 등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기동장비에 설치되는 소독기와 같이 설정.
- 전문술기 모의실습 장비, 외상 모의실습 장비, 분만 모의실습 장비, 정맥 주사 모의실습 장비 : 외래어(시뮬레이터)를 국어(모의실습 장비)로 순화하고, 현행기준의 상시물레이터를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의 세부기준 별로 세분류에 분류하고, 세세분류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연수를 현행 기준과 같이 설정.
- 이어폰 : 현행기준에 유선이어폰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세분류를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어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무선 이어폰이 포함 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 내용연수는 제조사 제시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고에 규격을 신설.
- 안전헬멧 : 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수정.
- 방사능보호복 : [별표 3]과 일치되게 개정.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3]을 개정함.

1) 기동장비

- 특수구급차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개정.

2)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호스 : 소방정대의 선상 및 도서지역 화재진압, 긴급 급수지원 등을 위한 소방호스가 필요하여, 보유기준을 소방정 5개로 설정하고, 적용기준을 기본장비로 신설. 다만,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비고 신설
- 일반관창 : 일반관창은 대부분 권총형 관창으로 대체되었기에 적용기준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권총형관창 : 펌프차에서 권총형관창의 활용성 증대로 펌프차 보유기준을 2개에서 4개로 상향 조정.
- 중발포용 폼관창 : 펌프차량의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 빈도가 낮아 보유기준을 펌프차·화학차 별 2개에서 1개로 하향 조정.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개인랜턴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 개인장비가방 : 구조대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진압, 구급, 운전원 포함)도 인명구조 및 생활안전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장비가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분류, 세분류 및 보유기준을 신설.
- 구명조끼 : 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안전센터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을 신설.

- 공기호흡기 용기·등기계·면체·보조마스크,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헬멧, 방화장갑, 안전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안전안경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3) 정보통신장비

- 이어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4) 구조대 장비보유기준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마취장비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사정거리에 차이가 있어 블로우건과 마취총을 각 1개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 벌집제거장비세트(보호복, 제거기 등)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 마커부이 : 수중의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상에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수난구조대 도착 전에 일반구조대가 현장활동을 수행해야 함으로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 기본장비로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개로 신설.
- 경계지역 설정라인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명칭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하고, 엔진식과 배터리식을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을 1개로 설정.

- 야간투시경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분류를 개정. 수색구조 임무를 위하여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야간 투시경을 갖추어야 함으로, 119항공대는 선택장비에서 기본장비로 변경하고, 공동장비로 하되 조종사는 단독장비로 개정.
- 소방드론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 하고, 육상드론은 보유기준을 종전과 같이하고 수중드론은 1대 신설.
- 문개방기구 : 집중호우 대응 및 장비활용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1대에서 2대로 높이고,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는 기본장비로 개정.
- 공기호흡기 용기·등지게·면체·보조마스크 : [별표 3] 화재진압장 비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단독장비 1개로, 적용기준을 119항공대 기본장비로 개정.
- 대원위치추적장치 : 세트로 운영되는 장비로 보유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보유기준 개정.
- 수중펌프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도 필요한 장비로 세분류를 신설.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대로 설정.

5)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 119항공대에 두는 구급장비 중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작사 항공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비고 신설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ml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펄버런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감염보호복세트 : 기동장비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119구급대·119항공 대·펄버런스별 보유기준을 10세트에서 5세트로 개정

- 소독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적용기준을 선택장비로 설정.

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4]을 개정함.

-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정비와 소관 소방장비를 통합하고, 긴급 구조통제단 운영장비는 구조과에서 대응총괄과로 이체하였으며, 소방 항공과 소관 소방장비에 소방드론과 비상탈출호흡장비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현행과 같음)
제1장 총 칙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②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에 효율성을 제공하거나 대원에 대한 보호 성능을 가진 유형의 물품 또는 물건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소방장비 관리대상으로 하	(현행과 같음)

고, 그 이외의 것은 소방장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현행과 같음)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 (현행과 같음)

기준) ①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단위별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1. "대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8종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2. "중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대분류가 동일하고 장비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이 유사한 장비끼리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분류 단위를 말하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한다. (현행과 같음)

3. "소분류"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능을 다른 장비와 구분되도록 정의하여 분류하는 단 (현행과 같음)

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포괄용어로 한다.

4. "세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중요 기능 또는 용도가 추가되어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용도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현행과 같음)

5. "세세분류"란 세분류로 분류된 소방장비 중에서 크기 또는 적용대상이 달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현행과 같음)

제5조(새로운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 적용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소방장비의 소방청 소관부서와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분류기준 적용방안의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제1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확정해 협의를 요청한 소방기관 및 다른 소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내용연수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② 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현행과 같음)

1.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현행과 같음)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3장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후단 신설>

소방장비

----- 이 경우, 별표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제8조(보유기준의 시·도별 탄력적 적용) ① 소방본부장은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제7조제2항의

----- 출
동빈도 등 지역

보유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경우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의 소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장비 보유기준) 중앙119구조본부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방교육훈련기관의 교육장비 보유기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별도의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4장 소방장비 운용기준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소방장비의 등록)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제3조의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에 따라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 소방장비의 통계관리, 규격 작성, 보유기준, 내용연수 설정 등 소방장비 관리와	(현행과 같음)

관련된 업무에 있어 소방장비의 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특성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부서별 역할 분담) ① 소 (현행과 같음)

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② 총괄부서는 소방장비 분류 (현행과 같음)

및 보유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로서 장비총괄과가 담당한다.

③ 소관부서는 개별 소방장비의 (현행과 같음)

사용기준을 정하고, 분류 및 보유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해당 장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소방장비 분류심의회) (현행과 같음)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위원은 별표 4의 <u>소관 부서의 장 및</u> 소방장비에 전문성이 있는 <u>시·도</u>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u>소방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 또는</u> ----- ----- <u>시·도 소속</u> ----- -----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현행과 같음)
1.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현행과 같음)
2.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119구조구급분과위원회 위원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학과 교수	(현행과 같음)
제15조(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현행과 같음)

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심의·의결 대상)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별표 1)의 조정
2. 소방장비 보유기준(별표 3)의 신설

<신설>

제17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 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1을 말한다)---

---(별표 3을 말한다)---

3. 제6조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내연연수 결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를 긴급히 소방기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50만원 미만의 소모품 (현행과 같음)

3.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에 있는 장비 중 소관부서장이 그 효용성을 고려해 소방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비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0호, 2021.09.30.>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특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 (현행과 같음)

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적용내용
이 개정될 때까지는 구급장비
중 선택장비를 전문선택장비로
본다.

부칙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251호, 2022. 4.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다.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칙 <제000호, 0000. 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다.

[별표 1]

1. 기동장비(대분류01)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구급차】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차(10)					【구급차】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차(10)				
	【특수구급차】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구급차(01)	<신설>	<신설>	5		【특수구급차】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구급차(01)	소형	기본차량의 승차인원이 7인승~14인승 - 전장(길이) 5,000mm초과 ~ 6,000mm미만 - 전폭(너비) 1,900mm초과 ~ 2,000mm미만 - 전고(높이) 1,920mm초과 ~ 2,500mm미만	5
							중형	기본차량의 승차인원이 15인승~24인승 - 전장(길이) 5,200mm초과 ~ 6,280mm미만 - 전폭(너비) 1,920mm초과 ~ 2,100mm미만 - 전고(높이) 2,450mm초과 ~ 2,860mm미만	5
							대형	기본차량의 승차인원이 25인승이상 - 전장(길이) 6,280mm이상 - 전폭(너비) 2,035mm이상 - 전고(높이) 2,795mm이상	5
	【음압구급차】 감염병 환자 이송실에 음압 발생이 가능한 구급차(02)			5		【음압구급차】 감염병 환자 이송실에 음압 발생이 가능한 구급차(02)			5
	【험지구급차】 산악지형 등 험로 수행이 가능한 구급차(03)			5		【험지구급차】 산악지형 등 험로 수행이 가능한 구급차(03)			5
	【챔버구급차】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설치한 구급차(04)			5		【챔버구급차】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설치한 구급차(04)			5

2. 화재진압장비(대분류02)

나. 간이소화장비(중분류02)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화기】 각종 형태의 소화약제가 담겨있는 기구로 자체압력을 가하여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장비(01)					【소화기】 각종 형태의 소화약제가 담겨있는 기구로 자체압력을 가하여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장비(01)				
	【분말 소화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1)			10		【분말 소화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1)			소모품
	【강화액 소화기】 액체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2)			소모품		【강화액 소화기】 액체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2)			소모품
	【투척용 소화기】 액체형태의 소화약제를 투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3)			소모품		【투척용 소화기】 액체형태의 소화약제를 투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3)			소모품
	【K급 소화기】 강화액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식용유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4)			소모품		【K급 소화기】 강화액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식용유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4)			소모품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5)			소모품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5)			소모품
	【하론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6)			소모품		【하론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6)			소모품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불활성기체 등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7)			소모품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불활성기체 등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07)			소모품

다. 소화보조장비(중분류03)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방용사다리】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사다리(01)					【소방용사다리】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사다리(01)				
	【복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1)			10		【복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1)			10
	【단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2)	<신설>		10		【단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2)	일반 안테나식		10 10
	【절연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3)			10		【절연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3)			10
	【거는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4)			10		【거는식 사다리】 소방활동시 건물 등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04)			10
<신설>					【이동식 소화수조】 소방용수를 공급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수조 장비(04)				
	<신설>					【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헬기 또는 소방자동차 등에 소방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동식 수조(01)			
	<신설>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전기차 등의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동식 수조(02)			
<신설>					【전기차 화재진압 보조장치】 전기차 화재진압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치(05)				
	<신설>	<신설>				【방사 장치】 물을 방사하여 배터리를 냉각하는 장치(05)	40mm		
	<신설>	<신설>					65mm		

3. 구조장비(대분류03)

가. 일반구조장비(중분류01)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동물포획장비 세트】 동물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일체(04)					【동물포획장비 세트】 동물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일체(04)				
	【동물포획장비】 동물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01)			5		【동물포획장비】 동물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01)			5
	【 마취총 】 공기압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동물 포획용 마취총 (02)	<신설>		10		【 마취장비 】 공기압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동물 포획용 마취장비 (02)	블로우건 마취총		10 10
	【 벌집제거장비 】 벌집제거에 사용하는 장비(03)			소모품		【 벌집제거장비세트(보호복, 제거기 등) 】 벌집제거에 사용하는 장비(03)			소모품

다. 수난구조장비(중분류03)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부수장비】 수난 구조 활동에 필요한 부수장비(04)					【부수장비】 수난 구조 활동에 필요한 부수장비(04)				
	【수난용 들것】 부력이 있는 수상 구조대상자 이송장비(01)			5		【수난용 들것】 부력이 있는 수상 구조대상자 이송장비(01)			5
	【선외기】 고무보트 후미에 장착하는 엔진식 동력 추진장비(02)			7		【선외기】 고무보트 후미에 장착하는 엔진식 동력 추진장비(02)			7
	【수난구조용서프보드】 수상에서 구조대상자에 접근 및 수상 이동장비(03)			8		【수난구조용서프보드】 수상에서 구조대상자에 접근 및 수상 이동장비(03)			8
	【분리형장대세트】 수중, 수상에서 몸체 연장 형태로 견인 및 인양 등에 사용되는 장비(04)			5		【분리형장대세트】 수중, 수상에서 몸체 연장 형태로 견인 및 인양 등에 사용되는 장비(04)			5
	【수상·빙판용 경량 보트】 자체 부력을 가지며 구조대상자에 접근 및 구조하는 썰매형태의 장비(05)			7		【수상·빙판용 경량 보트】 자체 부력을 가지며 구조대상자에 접근 및 구조하는 썰매형태의 장비(05)			7
	<신설>			<신설>		【 유실방지망 】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의 유실 방지에 사용되는 장비(06)			소모품

라.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중분류04)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경계구역 설정라인】 재난현장 출입인원 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 라인(01)					【경계구역 설정라인】 재난현장 출입인원 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 라인(01)				
	【경계지역 설정라인】 재난현장 출입인원 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 라인(01)	빨강 (HotZone)		소모품		【경계지역 설정라인】 재난현장 출입인원 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 라인(01)	HotZone (빨강)		소모품
		노랑 (Warmzone)		소모품			Warmzone (노랑)		소모품
		안전 (ColdZone)		소모품			ColdZone (파랑)		소모품

바. 중량물 작업장비(중분류06)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중량물 유압장비】 중량물 제거에 사용하는 유압장비(01)					【중량물 유압장비】 중량물 제거에 사용하는 유압장비(01)				
	【배터리유압장비세트】 배터리 동력의 전개, 절단, 램 기능의 중량물 작업 장비(01)	유압전개기		9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배터리 동력의 전개, 절단, 램 기능의 중량물 작업 장비(01)		유압전개기		9
		유압절단기		9			유압절단기		9
		유압램		9			유압램		9
	【대형유압엔진펌프세트】 유압장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압엔진펌프(02)	유압전개기		9	【대형유압엔진펌프세트】 유압장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압엔진펌프(02)		유압전개기		9
		유압절단기		9			유압절단기		9
		유압램		9			유압램		9
	【유압엔진펌프】 중량물 유압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압펌프(03)	<신설>		9	【유압엔진펌프】 중량물 유압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압펌프(03)		대형		9
							중형		9
							소형		9
	【유압콤비들】 전개기와 절단기의 복합기능을 가진 유압장비(04)	<신설>		9	【유압콤비들(일반/방수)】 전개기와 절단기의 복합기능을 가진 유압장비(04)		엔진식		9
							배터리식		9

사. 탐색구조장비(중분류07)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적외선 야간투시경】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 목표물 식별 장비(01)					【야간투시경】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 목표물 식별 장비(01)				
	【적외선야간투시경】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 목표물 식별 장비(01)			10		【야간투시경】 야간 또는 어두운 환경 목표물 식별 장비(01)			10
【공중수색장비】 원격조정 육상, 수상 등 수색 장비(10)					【수색장비】 원격조종 육상, 수상 등 수색 장비(10)				
	【소방드론】 원격조정 육상, 수상 등 수색 장비(01)	<신설>		5		【소방드론】 원격조종 육상, 수상 등 수색 장비(01)	육상드론		5
							수중드론		5

4. 구급장비(대분류04)

나. 응급처치장비(중분류02)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호흡유지기구】 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02)					【호흡유지기구】 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02)				
	【백밸브마스크】양압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주머니(백)가 붙은 환기마스크(01)	성인용		소모품	【백밸브마스크】양압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주머니(백)가 붙은 환기마스크(01)	성인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비강캐놀라】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튜브(02)	성인용		소모품	【비강캐놀라】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튜브(02)	성인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안면마스크】코와 입을 덮는 산소 공급 마스크(03)	성인용		소모품	【안면마스크】코와 입을 덮는 산소 공급 마스크(03)	성인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비재호흡마스크】일방향 밸브가 달린 공기저장낭이 있는 산소 공급 마스크(04)	성인용		소모품	【비재호흡마스크】일방향 밸브가 달린 공기저장낭이 있는 산소 공급 마스크(04)	성인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소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영아용		소모품	
	【자동식산소소생기】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인공호흡을 돕는 기구(고정용)(05)	고정용		5	【자동식산소소생기】압축산소를 동력원으로 인공호흡을 돕는 기구(05)	고정용		5	
		휴대용				휴대용			
	【의료용분무기(Nebulizer)】액상의 약물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는 기구(06)			5	【의료용분무기(Nebulizer)】액상의 약물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는 기구(06)			5	
	【전동식의료용흡인기(휴대용)】이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전동방식의 기구(07)			3	【전동식의료용흡인기(휴대용)】이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전동방식의 기구(07)			3	
	【휴대용인공호흡기(Portable Ventilator)】호흡을 돕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구(08)			5	【휴대용인공호흡기(Portable Ventilator)】호흡을 돕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구(08)			5	
	【호흡량 측정기】호흡량, 시간, 횟수 등을 측정하여 나타내는 기구(9)			5	【호흡량 측정기】호흡량, 시간, 횟수 등을 측정하여 나타내는 기구(9)			5	
	【흡입용튜브】 이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기구(10)	성인		소모품	【흡입용튜브】 이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기구(10)	성인		소모품	
		소아							
		영아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순환유지 기구】약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그 보조기구(04)					【순환유지 기구】약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그 보조기구(04)				
	【수액연결선】수액(팩, 병)과 카테터를 연결해주는 선(01)			소모품		【수액연결선】수액(팩, 병)과 카테터를 연결해주는 선(01)			소모품
	【정맥주사바늘】정맥로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카테터를 포함한 침습적 바늘(02)			소모품		【정맥주사바늘】정맥로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카테터를 포함한 침습적 바늘(02)			소모품
	【 주사기(30ml 포함) 】약물 등 용액을 담아 주입할 수 있는 기구(03)			소모품		【 주사기 】약물 등 용액을 담아 주입할 수 있는 기구(03)			소모품
	【3방향 수액밸브】3방향 밸브가 달린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04)			소모품		【3방향 수액밸브】3방향 밸브가 달린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04)			소모품
	【수액연장선】수액연결선의 연장을 위한 선(05)			소모품		【수액연장선】수액연결선의 연장을 위한 선(05)			소모품
	【정맥주사바늘 고정테이프】정맥로 확보가 완료된 카테터의 고정을 위한 테이프(06)			소모품		【정맥주사바늘 고정테이프】정맥로 확보가 완료된 카테터의 고정을 위한 테이프(06)			소모품
	【수동식 수액펌핑기】수액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돕는 기구(07)			5		【수동식 수액펌핑기】수액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돕는 기구(07)			5
	【자동식 수액펌핑기】수액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돕는 기구(08)			5		【자동식 수액펌핑기】수액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돕는 기구(08)			5
	【자동주사공급기】주사기에 담긴 약물을 전동식으로 주입하는 기구(09)			5		【자동주사공급기】주사기에 담긴 약물을 전동식으로 주입하는 기구(09)			5
	【자동수액공급기】일정량의 수액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10)			5		【자동수액공급기】일정량의 수액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10)			5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환자 운반기구】환자를 이동시키는 기구(01)					【환자 운반기구】환자를 이동시키는 기구(01)				
	【주들것】기동장비에서 환자를 옮겨 싣고 내리는 장비(01)	차량용		5		【주들것】기동장비에서 환자를 옮겨 싣고 내리는 장비(01)	차량용		5
		헬기용		5			헬기용		5
		선박용		5			선박용		5
	【전동식 주들것】전동식으로 구동이 가능한 주들것(02)			5		【전동식 주들것】전동식으로 구동이 가능한 주들것(02)			5
	【분리형들것】들것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환자를 싣고 내리는 기구(03)			5		【분리형들것】들것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환자를 싣고 내리는 기구(03)			5
	【가변형들것】부드러운 재질로 형태가 유연하게 변하는 들것(04)			2		【가변형들것】부드러운 재질로 형태가 유연하게 변하는 들것(04)			2
	【계단이송용 들것】레일이 달려 있어 계단 이송 시 사용 가능한 들것(05)			3		【계단이송용 들것】레일이 달려 있어 계단 이송 시 사용 가능한 들것(05)			3
	<신설>			<신설>		【 영아이송장치 】신생아 및 영아 이송 시 사용 가능한 장치(06)			5

마. 감염방지장비(중분류05)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장비 소독기구】감염원에 노출된 장비를 소독 또는 세척하기 위한 기구(02)					【장비 소독기구】감염원에 노출된 장비를 소독 또는 세척하기 위한 기구(02)				
	【소독기】기동장비에 설치하여 환자실을 <u>소독할 수 있는 기구</u> (01)	차량용		5	【소독기】기동장비에 설치하여 환자실을 <u>소독하거나, 청사 등에 설치하여 구급장비를 소독할 수 있는 기구</u> (01)	차량용			5
		헬기용		5		헬기용			5
		선박용		5		선박용			5
		<신설>		<신설>		기타			5
	【플라즈마 멸균기】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02)			5	【플라즈마 멸균기】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02)				5
	【자외선살균소독기】자외선을 사용하여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03)			5	【자외선살균소독기】자외선을 사용하여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03)				5
	【헬멧소독기】헬멧, 장갑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다목적 소독기(04)			5	【헬멧소독기】헬멧, 장갑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다목적 소독기(04)				5

마. 교육실습장비(중분류08)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전문교육 및 실습, 평가를 위한 장비(02)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전문교육 및 실습, 평가를 위한 장비(02)				
	【 <u>상시물레이터</u> 상처표시를 부착, 교체하여 외상처치를 실습할 수 있는 마네킨(01)	성인		5	【 <u>전문술기 모의실습 장비</u> 전문술기를 실습할 수 있는 모의실습 장비(01)	성인			5
		소아				소아			5
		신생아				신생아			5
		분만			【 <u>외상 모의실습 장비</u> 상처표지 부착, 교체가 가능한 외상처치 모의실습 장비(02)				<삭제> 5
		정맥			【 <u>분만 모의실습 장비</u> 분만 실습이 가능한 모의실습 장비(03)				<삭제> 5
	【골강주사 마네킨】골강내 주사기를 삽입 <u>시뮬레이션</u> 이 가능한 마네킨(02)			5	【 <u>정맥주사 모의실습 장비</u> 정맥주사 실습이 가능한 모의실습 장비(04)				5
	【12리드 심전도 마네킨】심전도 <u>시뮬레이션</u> 이 가능한 마네킨(03)			5	【골강주사 마네킨】골강내 주사기를 삽입 <u>모의실습</u> 이 가능한 마네킨(05)				5
					【12리드 심전도 마네킨】심전도 <u>모의실습</u> 이 가능한 마네킨(06)				5

5. 정보통신장비(대분류05)

마. 유선통신장비(중분류05)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주변장치】 소방활동중 원할한 음성 청취장치(04)					【주변장치】 소방활동중 원할한 음성 청취장치(04)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전화기, 무전기 연결 무선장치(01)			소모품		【이어폰】 휴대전화기, 무전기 연결 유·무선장치(01)			소모품
	【항공용 헤드셋】 항공기내 음성 송·수신 장치(02)			3		【항공용 헤드셋】 항공기내 음성 송·수신 장치(02)			3

7. 보호장비(대분류07)

가. 호흡장비(중분류01)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공기호흡기】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1)					【공기호흡기】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1)				
	【공기호흡기 용기】 압축된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01)	60분용		10		【공기호흡기 용기】 압축된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01)	60분용		10
		45분용		10			45분용		10
		15분용		10			15분용		10
	【구급용 산소용기】 압축된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02)	고정용				【구급용 산소용기】 압축된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02)	고정용		
		휴대용					휴대용		
	【공기호흡기 등지게 】 용기, 면체, 보조마스크를 결합하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03)	일반용		10		【공기호흡기 등지게 】 용기, 면체, 보조마스크를 결합하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03)	일반용		10
		15분용		10			15분용		10
	【공기호흡기 면체】 안면부 전체에 밀착시켜 용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04)			3		【공기호흡기 면체】 안면부 전체에 밀착시켜 용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04)			3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코와 입에 밀착시켜 용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05)			3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코와 입에 밀착시켜 용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비(05)			3
	【공기호흡기 보조필터】 면체에 장착시켜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장비(06)			소모품		【공기호흡기 보조필터】 면체에 장착시켜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장비(06)			소모품
	【호스릴형 공기호흡기】 호스릴로 공기를 공급해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7)			5		【호스릴형 공기호흡기】 호스릴로 공기를 공급해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7)			5
	【제호흡장비】 산소와 공기를 이용하여 다시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8)	잠수용				【제호흡장비】 산소와 공기를 이용하여 다시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08)	잠수용		
		육상용					육상용		
	<신설>		<신설>	<신설>		【비상탈출호흡장비】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탑승자가 비상 탈출하는 시간 동안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는 장비(09)		휴대용 공기공급기 호스형 타입	5

나. 보호장구(중분류02)

현행					개정안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안전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2)					【안전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2)				
	【방화헬멧】 화염과 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1)			5		【방화헬멧】 화염과 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1)			5
	【안전헬멧】 화재 이외의 재난현장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2)	구조용	안전헬멧 표준규격 에 따른 헬멧	5		【안전헬멧】 화재 이외의 재난현장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02)	구조용	안전헬멧 기본규격 에 따른 헬멧	5
		구급용	안전헬멧 표준규격 에 따른 헬멧	5			구급용	안전헬멧 기본규격 에 따른 헬멧	5
		특수구조용	안전헬멧 표준규격 중 통가구가 있는 헬멧	5			특수구조용	안전헬멧 기본규격 중 통가구가 있는 헬멧	5
	【수난구조헬멧】 물 빠짐 기능이 있어 수난구조 현장에 적합한 헬멧(03)			3		【수난구조헬멧】 물 빠짐 기능이 있어 수난구조 현장에 적합한 헬멧(03)			3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내용연수
【방호복】 재난현장에서 대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6)					【방호복】 재난현장에서 대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6)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1)			5		【방열복】 고온의 복사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1)			5
	【내전복】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2)			5		【내전복】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2)			5
	【화학보호복】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3)	A급		5		【화학보호복】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3)	A급		5
		B급		5			B급		5
		C급		소모품			C급		소모품
	【방사선보호복】 방사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4)			5		【방사능보호복】 방사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4)			5
	【폭발물보호복】 폭발로 인한 충격, 파편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5)			5		【폭발물보호복】 폭발로 인한 충격, 파편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장비(05)			5

[별표 2]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도첨부>

[별표 4]

현행				개정안			
소방장비 분야별 소관부서(제13조 관련)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관계법령	소관 소방장비	비고	소관부서	관계법령	소관 소방장비	비고
<신설>	<신설>	<신설>		대응총괄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구조과	119구조법 시행규칙(약) 제3조제3항	·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구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삭제>	<삭제>	
	<신설>	<신설>			119생활안전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생활안전대 차량 및 보유장비	
119구급과	119구조법 시행규칙(약) 제7조제3항	·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오토바이		119구급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오토바이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가 갖추어야할 장비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가 갖추어야할 장비	
구조과	119생활안전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생활안전대 차량 및 보유장비		<삭제>	<삭제>	<삭제>	
화재 대응조사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별표6	·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할 장비		화재 대응조사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할 장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1	·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1	·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별표 1의 장비 중 화재진압장비(대분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	· 별표 1의 장비 중 화재진압장비(대분류)	
화재 예방총괄과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 별표	·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화재 예방총괄과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7조 별표	· 화재안전조사단 점검장비	
정보통신과	소방정보 통신 운영관리규정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정보통신장비(대분류)		정보통신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정보통신장비(대분류)	
장비총괄과	소방선박 운영·관리규정 별표 3부터 별표 8	· 별표 3부터 별표 8에 규정된 장비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선박		<삭제>	<삭제>	<삭제>	
소방항공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6항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항공기		소방항공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항공기, 소방드론, 비상탈출호흡장비	
장비총괄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소방항공기, 소방선박 제외)		장비총괄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소방항공기 제외)	
	<신설>	<신설>			소방선박 운영·관리규정 제11조·제13조 별표 3부터 별표 8	· 별표 3부터 별표 8에 규정된 장비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기동장비 중 소방선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	· 그 외 장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	· 그 외 장비	

[별지 1] 소방장비 도입 사전검토서<현행과 같음>

[별지 2] 소방장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현행과 같음>